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2. 09. ~ 12. 14.)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를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로 한다.

제6조 제목 “참전유공자증의 발급 등”을 “국가유공자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을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32만원”을 “34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u>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u>	2. ----- ----- <u>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조(참전유공자증의 발급 등)	제6조(국가유공자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u>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하 “국가유공자증”이라 한다)</u> 을 발급한다.	① ----- ----- <u>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u>32만원</u> 으로 한다.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 ----- <u>34만원</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